

미확인보도 명시원칙-북한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은령(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1. 들어가며

영국 철학자 로스(Ross, W.D. 1877~1971)는 진실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도덕의 수행자로서 행동하거나, 타자와 공존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실 말하기’(truth-telling)는 특히 사회의 제 영역 중에서도 저널리즘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저널리즘이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진실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혹은 저널리즘에서 진실이 결여됐다고 판단한다면 독자들은 저널리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Duffy & Freeman, 2011, p.299).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사의 독자와 시청자에게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은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기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자 혹은 시청자와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이 진실한 관계의 유지를 위해 기자는 뉴스의 수용자에게 자신의 취재원과 취재방법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독자나 시청자에게 이러한 투명성의 의무를 지는 것은 기자들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취재원의 실수나 속임수로 인한 오보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만약에 기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가 치우칠 수도 있는 취재원로부터 온다면, 취재원을 실명으로 드러내는 일은 수용자가 그 정보의 치우침 가능성을 알게 해주고, 동시에 취재원이 수용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147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을 명시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성, 진실보도, 사실성, 전문성과 직결되는 요소”(박재영 .이완수, 2007)일 뿐만 아니라, 기사의 진실성에 관해 뉴스의 수용자와 기자가 신의 있는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재윤리의 현실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제3조 3항)고 ‘미확인보도 명시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더하여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5조1항)고 익명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한요건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취재현장에서는 미확인 보도나 취재원의 명시 원칙, 익명 취재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현실 때문에 기자가 주요 현안에 대한 1차적인 취재원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처음부터 정보원의 의도에 따라 기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호규, 김병선, 2015, 280쪽)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한적 취재환경 아래에서의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미확인 보도, 특히 익명 취재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미확인 보도를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북한관련 보도의 현황과 익명 취재원

북한 관련 취재의 주요한 경로는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정부 당국의 발표다. 정부가 출처가 되는 정보의 특징은 ‘흘리기 식’이라는 것이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해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정부가 의도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기자들은 합리적 의심을 품는다. 2013년 12월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 가능성을 흘렸을 때 언론은 초기에 보도를 머뭇거렸다. 당시 국정원의 대선 댓글 작성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원의 의도적인 정보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내놓는 정보가 “북한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국내정치적 상황에 대해서까지 고려해 정보를 판단해야 하는 것”(장용훈, 2014, 89쪽)이 언론의 처지다. 북한 관련 보도처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보 독점권을 쥐고 있는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Tuchman, 1978)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 공영방송 채널인 PBS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기간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은 익명으로 전쟁 관련 정보를 뉴욕타임스에 흘려 기사화하게 한 뒤, NBC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용한 사례가 있다(Duffy & Freeman, 2007).

두 번째 취재 경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만든 단체 등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한 사람이거나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 있어 계속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취재원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기 쉬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소문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북한 중앙 정부의 흐름을 보여주는 정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남한 사회에서의 이들의 불안정한 지위도 북한사회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보를 객관적인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 번째 경로는 조선중앙TV 등의 방송 매체와 노동신문 등 신문 매체 들이다. 북한의 언론이 정보나 여론의 전달보다는 체제 선전 도구로 기능하지만, 보도의 행간을 읽는 방식을 통해 북한 체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외신 보도다. 지난 8월 북한의 태영호 주영 공사 가족이 망명했을 때, 국내 일부 언론(이용수·최원석 2016; 황금비 2016)이 태 공사 가족의 망명 당시 상황을 밝힌 취재원으로 삼은 것은 영국의 일간지 익스프레스의 일요판인 ‘선데이 익스프레스’의 보도(Giannangeli, 2016)였다. ‘선데이 익스프레스’의 원문은 망명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렸지만, 망명과정을 알려준 정보원은 ‘다수의 취재원(sources)’이라고만 밝혀져 있다. 고급 정보를 전해준 익명의 취재원이 어느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복수의 취재원이 맞는지, 이러한 정보의 출처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지를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망명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켜본 관계자로서 가장 세밀하게 특정된 취재원은 ‘고위 정보원(senior intelligence source)’ 뿐 이었다.

이같은 취재원들에 의존하는 북한 관련 보도의 최대 난점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보경쟁이 시작되면 소문과 억측, 사실이 뒤엉켜 담당 기자들이 서로 기사를 쏟아내기에 바빠지고, 결국 “‘북한 관련 보도는 특종 아니면 오보’라는 냉소적 평가”(임을출, 2014, 96쪽)까지 나오게 된다. 특히 이 와중에서 문제적인 기사로 꼽히는 것은 익명 취재원 한 사람의 정보로 쓰여진 기사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나 소문이 어떻게 변이하고, 왜곡되고, 확대되며 해외의 다른 뉴스 매체들에 의해서 재포장되는지를 보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Choe Sang-Hun, 2016)인 지경이다.

북한관련 보도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으로 접근한 이호규

와 김병선(2015)은 이 네트워크에 탈북자와 탈북지원 단체, 정보기관, 비전문적 취재 기자와 브로커 PD, 시청자와 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행위자인 탈북자와 탈북지원 단체들은 북한 인권을 문제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탈북을 정당화하거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소식을 구하는 등의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언론보도의 정보원으로 나선다. 두 번째 행위자인 정부와 정보기관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정보원으로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틈을 이용해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북한관련 정보를 공개해 기사화하게 만드는 주체다. 세 번째 행위자는 북한 취재 기자들이다. 이들은 때로 정보원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취재 경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탈북자나 정보기관의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취재의 결과 보도되는 뉴스는 사실확인이 어려워 “상상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지만 끊임없이 소구된다. 바로 네 번째 행위자인 뉴스의 소비자들이 북한 상황에 대한 관심, 인간적인 연민, 공감 등으로 북한 관련 보도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즉 네 행위자들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평면이 바로 북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북한 관련 보도는 취재원의 제한, 정보의 독점적 주체인 정부와 정보기관 등의 편익에 따른 정보 분배에 기댈 수밖에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부정할 근거도 없는” (하승희, 이민규, 2012, 224쪽)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뉴스 수용자의 존재로 인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된다고 할 수 있다.

취재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보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만이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2003년 2월 25일~ 2011년 10월14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북한 관련 보도의 프레임을 연구한 하승희 등(2012)은 정보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명 정보원은 전체의 57.5%, 익명 정보원은 40.2%, 기타는 2.2%임을 확인했다. 즉 북한 관련 보도에서 실명 정보원 못지 않은 숫자의 익명정보원이 취재의 출처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익명 정보원 의존이 빚어내는 문제점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타자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보에잉크(Boeyink, 1990)는 “정보의 출처가 제공된다면, 정보는 독립적으로 타자에 의해 검증될 수 있다”(p.235)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의 인

1) 익명 취재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익명 취재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역사 상 많은 기념비적 보도들이 내부 고발자 등 익명 취재원들의 제보를 통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보도는 익명 취재원의 제보와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 세기적 특종이다. 그러나 익명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탁월한 보도는 언제나 해당 정보에 대해 취재진이 독립적인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일례로 펜타곤 페이퍼 보도까지 뉴욕타임스는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기자들이 익명취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검증했다(Talk to the newsroom, 2008).

용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면 기사에 보도된 사실이 맞는지 그 출처에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 (Duffy & Freeman, 2011, pp.299-300). 즉 익명 정보원은 ‘진실 말하기’(truth telling)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자에 의한 교차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익명 정보원에 의존한 보도는 그 자체로 미확인 보도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익명 정보원의 두 번째 문제점은 기사가 의도한 방향으로 취재원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관련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연구한 한동섭과 유승현(2008)은 “익명 정보원은 기사의 작성과 이데올로기적 성향 그리고 신문사의 입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따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었다”(703쪽)고 분석했다. 관련하여, 보수.진보의 신문사 이념과 북한 보도 방식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김경희와 노기영(2011)은 이명박 정부시기(2008.1.~2010.2)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사이에서 취재원 출처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밝혔다. 취재원 중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중심취재원의 경우, 보수 신문에서는 분석대상의 7.2%가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었던 반면, 진보 신문에서는 분석 대상의 2.0%만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었다. 주변 취재원의 경우도 보수 신문에서는 분석 대상의 5.4%가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었으나 진보신문에서는 0.8%의 주변취재원만이 탈북자와 북한 주민이었다 (381쪽). 즉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뉴스 기사의 내용은 달라”지며, “정보원의 활용이 언론 보도가 묘사하는 현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한동섭.유승현, 2008, 705쪽) 가운데 익명 취재원은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한 부득이한 차선의 취재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편익적인 취재원으로 오용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익명취재원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인용의 형식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익명 취재원의 발언이 간접인용구가 아닌 직접 인용구일 때 더 문제가 된다. “직접 인용구는 기사를 믿을만하고 호소력 있게 만들며, 기자가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었음을 증명”(박재영. 이완수, 2007, 447쪽)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구보다 더 기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익명 취재원이나 기관은 적시된 취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인용구를 사용할 수 없지만 북한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익명취재원의 직접인용구가 제목으로 뽑히기도 한다.

3. 객관적인 북한 보도는 가능한가?

북한 관련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 익명 취재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마련된 것은 이미 1990년대 후반이었다.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1995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프로듀서 연합회는 공동으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을 제정해, 이 가운데 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익명 취재원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해 두었다. 당시 보도 실천요강은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항),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10항)라고 원칙을 정해 두었다.

한국신문윤리위는 별도의 북한보도 관련 조항은 만들지 않았지만, 남한의 현안 보도에 적용하는 객관보도의 준칙을 북한 관련 보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기자는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조 3항 미확인보도 명시원칙),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조 7항 보도자료의 검증),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조 1항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10조 1항 표제의 원칙),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10조 3항 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등이 북한 관련 보도를 심의할 때 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같은 보도준칙에 비추어 볼 때, 북한 관련 사안의 미확인 보도, 익명 취재원의 남용 문제는 이를 규제할 취재규범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원칙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의 취재와 보도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왜 객관보도는 이루어지기 어려울까.

첫째는 한국의 언론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와 익명 인용에 관해, 북한 관련 보도 뿐만 아니라 남한의 현안을 다루는 경우에도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관행은

상기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당시 언론이 정보원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살펴본 한동섭 등(2008)은 전체 750개 정보원 유형 중 40.4%가 익명취재원이었고, 이들이 주로 일반시민이거나 정부 관계자 등이라고 밝혔다. 하승희 등(2012)이 북한 관련 보도 정보원 분석에서 확인한 익명 정보원 분포(40.2%)와 비교해 보면 익명 취재원 의존 문제가 일차적 취재의 경로가 막혀있는 북한 보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언론계의 고질적인 취재관행임이 드러난다.

둘째는 북한이 한국 언론의 오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적 사안의 경우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취재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의 판단을 구하기 때문에 취재 주체가 오보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지만, 북한보도의 경우는 이런 자기검열의 강도가 느슨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관련 학자들과 일부 언론인들은 북한 관련 보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보로 판명난 기사에 대해 무조건 정정보도를 해야한다”(장용훈, 2014)고 지적한다.

그러나 취재관행,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제외해도 북한 관련보도에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희박하다. 이는 북한 관련 보도가 객관성을 닦는 합법적 논쟁 영역에 속해 있는가에 관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할린(Hallin, 1984)에 따르면 저널리스트의 세계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합의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이다. 합의의 영역은 사회적인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안이 다루어지는 곳으로서 언론은 굳이 반론을 제시할 필요 없이 합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의 수호자와 옹호자 역할을 하면 된다. 미국의 경우 1972년 이란 혁명 당시 이란 대사관에 갇혀 있던 인질들을 구출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 합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합법적 논쟁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이다. 이 영역에 서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상충하는 관점들이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서 논쟁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객관성이 엄격히 요구되며, 균형성 중립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선거보도 등이 전형적인 합법적 논쟁 영역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영국 BBC의 경우, 합법적 논쟁 영역을 다루는 편집제작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을 제시한다. 정치적, 산업적 논쟁거리에 대해 주요 이견들(main differing views)이 존재하는 이 영역에서는 다양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일정 범위에 속하는 견해나 관점을 제공해야 하며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균형

이 아닌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탈진·김경모·이준용, 2006)이다.

마지막으로는 ‘일탈의 영역(sphere of deviance)’이 존재한다. 이 영역은 사회적으로 일탈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언론은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행위에 대해 객관성을 지킬 필요없이 비판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할린은 이에 관한 예로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공산주의 관점 방송 금지를 제시한다.

할린의 세 영역 구분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은 언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행위나 사건들이 이 세 영역의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 합의나 정서에 따라 영역들을 오간다는 것이다. 즉 세 영역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모호하다. 미국이 베트남 전을 치르는 동안, 개전 초기에는 반전 운동이 일탈의 영역으로 간주됐지만, 전황이 어두워지고 미군의 사상이 많아지자 합법적 논쟁 영역으로 이동해 언론에서 정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반전운동가들의 주장도 다루어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 관련 보도에 할린의 모델을 적용하면, 반공이념을 앞세운 독재 치하에서 북한 관련 보도는 합법과 일탈 두 영역에만 존재했다. “합의의 영역을 벗어난 뉴스는 소위 색깔 논쟁을 불러오는 일탈적 행위로서 정치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처벌”(박정순, 2000, 13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간정부가 수립되고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2000년)이 이뤄진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동은 남북의 언론보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반복 프레임이 통일 프레임으로 교체 (김춘호, 2015)되며, 그때까지 “자기만의 수용자를 갖고 상호 폐쇄적이고 대립적으로 작용”했던 남북의 언론이 ‘화해와 교류, 협력의 시대’를 기치로 내걸게 된 것이다. 일례로 2000년 한국방송(KBS)은 남북 정상 회담 보도를 준비하면서, 북한문제를 다루는 보도 강령으로서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라는 두 가지 공통된 기본원칙을 천명했다(정재철,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보도는 그간 합법과 일탈의 흑백논리적인 구도를 벗어나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이 확대되며 국가보안법 등 금기시되던 논의들이 합법적 논쟁 영역으로 이동한다(<그림 1> 참조²⁾).

북한 관련 보도가 합법적 논쟁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이

2) <그림1>은 박정순(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남북 화해시대 남북 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14쪽에서 인용해 일부 수정.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들은 남북 화해 무드 이전에는 전적으로 일탈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자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들의 수용이 필요한 합법적 논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04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전개되자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은 각자의 정파성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했지만, 적어도 그 재구성의 방식은 반공주의 시대의 노골적인 이데올로기 전이 아닌 전문가 인용 등의 ‘객관화 전략’을 통해 수행됐다(송용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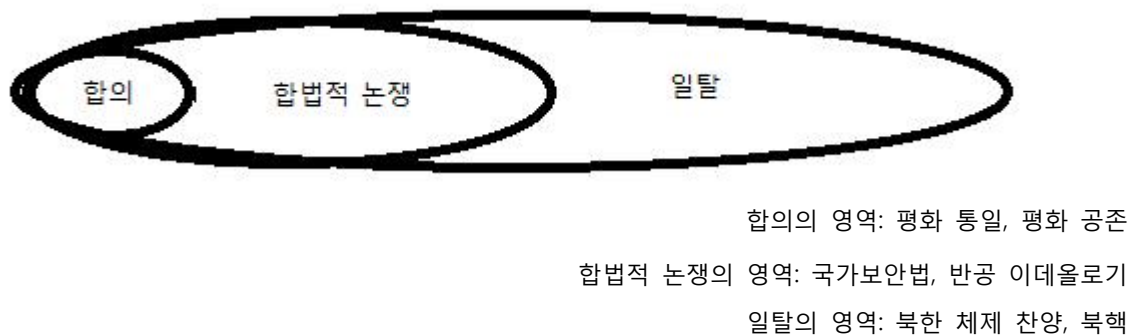


그림 1. 대북 포용 정책 이후 북한 관련 보도의 합의, 합법적 논쟁, 일탈의 영역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합의와 합법적 논쟁, 일탈의 세 영역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기류, 정서 등에 따라 유동하는 것이므로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있던 북한 관련 보도는 언제든지, 합의나 일탈의 흑백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극도로 경색되자 북한 문제에 관한 합법적 논쟁의 영역은 급격히 위축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KBS 9시 뉴스’의 매년 8월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한 집계(김춘효, 2015)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7년 8월에는 총 65건의 보도 중 북핵, 북한 홍수, 화폐개혁, 공개처형 등 북한체제를 다룬 기사가 5건이었던 반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에는 53건 중 30건, 2015년에는 6건 중 4건이었다. 전체 보도 건수에서 북한 체제를 다룬 기사의 비율도 높아졌지만, 이러한 취재 이슈는 취재원으로서 정부 당국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에 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인데다, 논박할 수 있는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보도의 양태와 관련해 북한 관련 보도에도 남한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사실성, 정확성

등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라는 규범적 요구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신문윤리위원회의 보도준칙 등이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북한 관련 보도는 남북 화해 무드 이전의, 합의 아니면 일탈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환원돼 객관보도의 요구들을 묵살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미확인 보도, 익명 취재원 남용을 막기 위한 실천적 제언

북한 관련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와 익명 취재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보도준칙은 현재 수준에서도 결코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언론 제작 현장에서 이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절차적인 수준에서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 객관보도(objective reporting)를 저널리즘 수행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북한관련 보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조치들을 검토해 본다.

1) 복수의 취재원 명기

미국의 AP 등은 이른바 ‘두 취재원 규칙(two source rule)’ ‘세 취재원 규칙(three source rule)’을 갖고 있다. 기사를 작성할 때 최소한 둘 이상의 정보원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수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할 경우 검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취재원의 의도에 휘말리기 쉽기 때문에 마련된 방어책이다. 북한 관련 보도들이 국내의 ‘소식통’ 등 익명의 단수 취재원에 의존해 작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명과 익명을 막론하고 복수의 취재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사의 검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진희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은 AP의 북한 발 보도에 관해 “AP 통신 데스크들은 모든 기사에서 적어도 2명의 취재원을 인용할 것을 요구하며, 대개는 그 이상 인용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2014).

복수의 취재원 인용은 단지 취재원의 숫자를 늘린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 취재원의 정보를 다른 독립적인 정보원을 통해 사실 확인함으로써 기사의 진실성을 높이는 것이 복수 취재원 확인 원칙의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빌 켈러 전 편집국장은 “양은 질과 같지 않다”며 “한 사람의 실제 사건 연루자의 정보가 그 사건을 전해들은 세 명의 간접정보원보다 더 낫다”고 복수 취재원 인용의 정확성에 관한 회의를 나타내기도 했다(Keller, 2008). 그러나 독립적인 취재원을 통해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정확성에 대해 확언할 수가 없다. 따

라서 “기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립적인 취재원으로부터 핵심 취재원의 정보를 검증할 것”(Duffy & Freeman, 2011)이 권고된다. 이러한 독립 취재원은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일례로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의 월별 북한 이탈 주민 숫자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한 것이다.

2) 익명 취재원에 관한 편집장의 심사기능 강화

한겨레신문은 2007년 제정한 취재보도 준칙에서 “기자는 기사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더라도, 그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한 이유 등을 담당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담당 편집장 또는 편집국장은 취재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칠 의무를 진다”(18조 익명 취재원 보고와 비밀 엄수 의무)고 명시했다. 보에잉크(1990)는 익명 취재원 사용에 관해 언론인들에게 제안한 지침의 첫 항목으로 “익명 보장은 반드시 편집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 취재원에 관한 데스크 강화는 취재기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쉽게 취재원의 익명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익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언론인은 취재원이 물리적 정신적 위해를 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갖지만, 동시에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실명 표기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취재기자만의 판단이 아닌 편집장의 공동 판단이 과연 익명 취재원의 정보를 믿을만한 것인지, 익명을 보장해야할 만큼의 중요한 뉴스인지, 익명이 정보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를 가늠하는 데 내부 ‘검색대’ 역할을 하게 된다. 편집장은 “반드시 익명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利害)를 저울질해야”(Boeyink, 1990)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3명의 수석급 에디터들을 익명 기사에 대한 심사자이자 허가자로 사내외에 공지했다. 이는 기왕에 담당 편집장 혹은 팀장에게 익명 취재원을 보고하던 규칙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서,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익명 취재원에게 의존한 기사의 경우 3명의 수석급 에디터 중 한 명이 기사를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게재할 것인지 여부를 재가하는 과정을 추가한 것이다. 타사와 속보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데스크들의 익명 취재원 인용 기사에 관한 심사기능을 강화한 것은 취재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재의 진실성을 높이고 이

에 대한 뉴스 수용자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조치도 앞선 6개월간 익명 취재원에 의존했던 두 개의 1면 기사가 오보로 판명된 뒤 내려진 것이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익명 취재원에 관한 데스크의 심사기능 강화는 ‘관계 당국자’ ‘소식통’ ‘탈북민’ 등으로 표현되는 취재원들의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믿을 수 있으며 지면에 어느 정도로 배치할 지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기능을 취재기자와 함께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북한 보도 환경의 특성 상 익명 취재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혹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스크가 익명 취재원의 실명과 신원, 익명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유한다는 것은 과연 익명으로 제공된 정보가 꼭 필요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인지를 판단하는 교차검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익명 취재원 표시에 관한 규칙 공유와 명시

익명 취재원의 표기는 “가능한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틀 안에서, 익명 취재원의 일반적인 지위를 되도록 자세히”(한겨레신문 취재보도 준칙, 17조)적어야 하며,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신문윤리강령 5조 1항)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재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자(descriptors)들은 뉴스의 독자나 시청자들이 익명 취재원의 동기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Duffy & Freeman, 2011).

북한 관련 보도에서 흔히 쓰이는 ‘소식통’은 ‘공무원이 아닌 취재원’을 익명 처리할 때 주로 활용되지만, 어떤 지위의 정보원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익명 취재원이다. ‘소식통’의 남발은 북한 관련 보도의 질을 떨어뜨린다. 국경지역에서 살다가 온 일반 주민으로서 북한의 권력 변화 등 핵심 사안을 평가할 수 없는 탈북민이 ‘소식통’이 되어 전하는 북한 현황과, 국내외 북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양적, 질적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북한 현황의 정보 질 차이는 현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원 보호를 빌미로 밝혀야 할 최소한의 표시자들도 없이 ‘소식통’의 말을 고스란히 전하는 뉴스는 수용자들로 하여금 북한 관련 정보의 질이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소식통과는 달리 북한 관련 보도의 주요 정보원인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표시자들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겨레신문의 아래 기사는 고위 공무원 익명 표기 관행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해당 발언의 화자가 누구인지”(이제훈, 2016) 가늠할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을 취재원으로 한 익명 보도엔 나름의 표기 관행이 있다. 취재원의 위상을 고려해 ‘고위 관계자→고위 당국자→당국자→관계자’순으로 구분한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무직 고위 공무원, 곧 장관과 차관을 뜻한다. 예컨대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수십 명이나 되지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세 명 중 한 명이 취재원이라는 뜻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아니면 김형석 통일부 차관, 둘 중 하나다.

‘고위 관계자’는 장·차관, ‘당국자’는 중앙부처 국장급, ‘고위 당국자’는 흔히 장관이 아닌, 차관이나 실장급 등 고위 직업 공무원을 뜻한다. 예컨대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익명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한테 뭔가를 얘기했다면, 흔히 ‘외교부 고위 당국자’라고 적는다. 더 친절한 기자는 ‘6자회담 등 북핵 업무를 맡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

‘당국자’는 정부 중앙부처의 국장급을 지칭한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의 12·28 합의 협의·이행에 관여해온 외교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사실상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뜻한다.

‘관계자’는 정부 중앙부처의 과장급을 가리킨다. 과장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사에 취재원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실무 수준에서라도 정책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정부 고위 관계자→고위 당국자→당국자→관계자’라는 위계를 구분한 익명 보도는, 기사의 맥락을 읽어낼 배경 지식을 지닌 독자라면 해당 발언의 화자가 누구인지 가늠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직급상의 위계가 분명한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소속 취재원이 아닐지라도, 대북 관련 보도에서 흔히 쓰이는 ‘소식통’의 일반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표시자들은 개발될 수 있다. 언론사 상호간의 이러한 표시자들의 공유는 북한 관련 보도에서 빚어지는 정보의 신뢰도 문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북한 관련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가 넘쳐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보도를 제 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저널리즘 윤리 의식의 희박에서만 찾을 수 없다. 취재의 출발점은 현장 보도에 있지만, 현장을 취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현지에서 살았던 탈북자나 북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국내외 정부 당국자, 전문가들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련 보도의 사실성, 진실성의 수준을 제한한다. 더하여 정권의 교체에 따라 남북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북한 보도는 그 방향성의 급전을 거듭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만 해도 “보도의 객관성과 민족의 화합과 화해”(KBS 보도준칙)가 천명됐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사실상 끊기고 북한의 핵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치닫자 ‘북한붕괴론’이 지배적인 프레임이 되면서, ‘보도의 객관성’이라는 기본적인 규범은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북한 관련 보도가 합의나 일탈의 영역이 아닌 다각적인 해석과 시각이 공존하는 ‘합법적 논쟁’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기사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묻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관련 보도의 객관성을 높이는 일은 텍스트 내부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북한 취재의 자원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좀 더 객관적인 취재를 해 내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의 북한 담당 기자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일부 언론사들이 북한 취재 전문기자를 두고 있지만, 보직순환의 관행이 일반적인 현재의 제작 환경에서는 장기간의 북한 취재를 통해 다각적인 취재 네트워크를 쌓음으로써 몇몇 ‘소식통’이나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 휘둘리지 않고 취재를 해 나가는 취재 문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재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속보경쟁은 과열되어 있는 극단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북한 관련 보도 환경의 특징이다. 특정 매체가 ‘단독’으로 1보를 보도하면, 타 매체는 최초보도에 대한 독자적인 사실 검증도 하기 전에 속보를 내보낸다. 1보가 미확인 보도였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익명 취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한 보도였다 하더라도 경쟁지의 보도를 통해 오보가 걸러지기 보다는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단 기사화를 보류하는 원칙”이 북한 관련 보도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속보 경쟁체제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원칙의 공유와 실천이 쉽지 않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미확인 보도가 끊이지 않는 현상이 낳는 최악의 결과는 언론의 공중에 대한 봉사 중 가장 기본적인 책무, 즉 공중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제

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보도의 객체인 북한 당국이 사실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객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질 낮은 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아닌 남한 국민들의 북한 문제에 관한 식견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미확인보도의 피해자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독자, 시청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관련 보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객관보도 원칙을 양보할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의 기준을 적용해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보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 관련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왕의 규범들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문윤리실천요강’ 등 현존하는 규범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북한 관련 보도의 객관성은 높아질 수 있다. 관건은 북한 보도에 관해서도 국내 정치, 사회, 경제의 쟁점 사안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사실 확인,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들과 편집국의 간부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필자는 현존하는 규범을 철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서 1) 복수의 취재원 명기 2)익명 취재원에 관한 편집장의 심사기능 강화 3)익명 취재원 표시에 관한 규칙 공유와 명시를 제안했다.

이 글은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신문들의 북한 관련 보도에 관해 폭넓고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단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현재 북한 보도의 전체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도 주제 영역에 따라 미확인보도의 전개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갈래를 차별성 있게 분석해내지 못했다. 동일한 미확인 보도라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관한 것과 북핵 문제에 관한 것은 그 발생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슈별로 미확인 보도의 생산과정을 점검해보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7.
- 김춘효 (2015, 8월). <‘반북’으로 회귀하는 대북 보도: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광복 70돌, 분단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연속 토론회 1.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박재영·이완수 (2007).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韓美) 신문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박정순 (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남북 화해시대 남북 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6-42.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한국언론학보>, 51권1호. 229-251.
-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탈진·김경모·이준웅.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용수·최원석(2016,8,22). 英 M16주연·美 조연·英 공군협찬 ‘태영호 망명작전’. <조선일보>.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2/2016082200271.html
- 이제훈(2016,9,21). 넘쳐나는 “대북 소식통”, 대체 누구일까요. <한겨레신문>
URL: 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1983.html
- 이진희 (2014). 북한관련 보도를 위한 제언. <관훈저널>, 130호, 101-106.
- 이호규·김병선 (2015). 탈북 사건 보도의 행위자-네트워크. <언론과학연구>, 15권1호, 270-300.
- 임을출 (2014). 북한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관훈저널>, 130호, 94-100.
- 장용훈 (2014). 북한 취재 어떻게 이뤄지나. <관훈저널>, 130호, 87-93.
- 정재철 (2009). 남한 방송의 북한 보도 생산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35-152.
-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1995).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 방송프로듀서연합회
- 하승희·이민규 (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22-241.
- 한겨레신문사 (2007).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
URL: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87473.html>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16). <신문윤리강령>.
URL: http://www.ikpec.or.kr/images/book/50_t11.pdf
- 한동섭·유승현 (2008).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권4호, 702-739.
- 황금비 (2016, 8,21). 영 언론 “태영호 망명, 마치 스릴러 소설같아”.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57635.html
- Boeyink, D. E. (1990). Anonymous sources in news stories: Justifying exceptions and limiting abuse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5(4), 233-246.

- Choe Sang-Hun (2016, September 15). Rumors, misinformation and anonymity: The challenges of reporting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 Duffy, M. J., & Freeman, C. P. (2011). Unnamed sources: A utilitarian exploration of their justification and guidelines for limited use.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6*(4), 297-315.
- Giannangeli, M. (2016, August 21). Revealed: North Korean defector met British spies on golf course in Watford. *Express*. Retrieved from <http://www.express.co.uk/news/world/702199/North-Korean-diplomat-defected-Thae-Young-Ho-south-london-marks-spencer>
- Hallin, D. C. (1984). The media, the war in Vietnam, and political support: A critique of the thesis of an oppositional media. *The Journal of Politics, 46*(1), 2-24.
- Keller, B. (2008, June 9). Keller memo on anonymous sources. *The New Times*. Retrieved from
URL: <http://www.nytco.com/pdf/assuring-our-credibility.pdf>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completely updated and revised*. 이재경 (역) (2009),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Sullivan, M. (2016, March 15). Tightening the screws on anonymous source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publiceditor.blogs.nytimes.com/2016/03/15/new-york-times-anonymous-sources-policy-public-editor/?_r=0
- Talk to the newsroom. (2008, June 9).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URL: <http://www.nytimes.com/2008/06/09/business/media/09askthetimes.html>
-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NY: The Free Press.

<이 행사는 언론진흥기금으로 개최함>